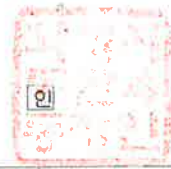


### 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 
공고합니다.

2024년 04월 30일

동탄4동장



세대주성명	성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**	김** 1980-02-02	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	거주불명등록이전 2024-04-30